

#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 제정 : 2004. 3. 2    □ 개정 : 2005. 8. 29    □ 개정 : 2007. 8. 27    □ 개정 : 2011. 12. 19
- 개정 : 2005. 3. 2    □ 개정 : 2006. 7. 1    □ 개정 : 2008. 3. 3    □ 개정 : 2013. 3. 3
- 개정 : 2005. 7. 1    □ 개정 : 2007. 2. 1    □ 개정 : 2010. 9. 3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원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입 학

제2조(응시자격) 본 대학원의 석사·박사학위과정 입학시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석사학위과정

- 가. 국내·외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나 취득 예정자
-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2. 박사학위과정

- 가.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나 취득예정자

제3조(지원구비 서류) 석·박사학위과정의 입학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소정 기일 내에 본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석사학위과정

- 가. 입학원서 1부(소정양식)
- 나. 출신대학졸업(예정)증명서
- 다. 출신대학 진 학년 성적증명서
- 라. 기타 필요한 서류

### 2. 박사학위과정

- 가. 입학원서 1부(소정양식)
- 나. 석사학위증명서
- 다. 출신대학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 라. 연구계획서
- 마. 기타 필요한 서류

제4조(입학전형방법) 본 대학원 입학전형방법은 일반전형,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①일반전형 : 일반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 또는 필기시험과 면접으로 구분하며 필기시험은 전공과 외국어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특별전형 :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1. 대학·전문대학 전임강사 이상의 현직교원
2. 국가 또는 정부출연 공공연구소 및 대학원위원회가 인정하는 민간연구소의 선임연구원급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원
3. 국가기관이 수여하는 학술상, 연구상 또는 예술상 수상자
4. 사법, 행정, 외무, 기술고시, 공인회계사, 기술사, 세무사 및 이에 준하는 국가시험의 최종 합격자
5. 국내·외에서 공인된 음악 또는 무용경연대회, 미술공모전, 체육대회 등의 상위입상자 중에서 현재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
6.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5급이상 공무원으로서 근무분야와 관련 있는 학과에 지원하는 자
7. 석사학위과정은 해당학과의 학부에서 4년 통산 학부성적이 80점(백분율환산 점수)이상인 자로 하고, 박사과정은 석사과정 통산 평균성적이 90점(백분율 환산점수)이상이며, 연구실적이 우수한 자
8.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학원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제5조(시험) 본 대학원 각 과정의 입학시험 과목과 그 출제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험과목 및 출제 내용

- 가. 전 공 : 전공분야의 기초지식 및 수학능력을 측정한다.
- 나. 외 국 어 : 기초영어 및 전공에 관한 영어 독해력을 시험한다.
- 다. 면 접 : 전공에 대한 지식과 수학능력, 적성, 인격 등을 심사한다.

2. 출제위원

- 가. 전 공 : 각 학과 주임교수가 추천한 교수중에서 대학원장이 출제위원으로 위촉 출제하게 한다.
- 나. 외국어(영어) : 대학원장이 출제위원을 위촉 출제하게 한다.

3. 배점 및 합격 기준

- 가. 필기시험 : 필기시험의 배점은 전공 200점, 외국어 100점 만점으로 한다.
- 나. 면접시험 : 각 학과 주임교수와 2인의 전공교수로 구성하고, 면접전형원칙에 의거 판정한다.

제6조(입학허가) 입학은 대학원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제7조(입학 확정) 소정의 전형절차를 거쳐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 기일 내에 등록을 함으로써 입학이 확정된다.

제8조(편입학) ① 당해 학년도 입학 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감한 여석 범위안에서 편입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②각 학위과정의 편입학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학위과정	편입학기	지원자격(이수인정학점 기준)	비고
석사	2	1학기 이상이고 6학점 이상	동일 및 관련학과
	3	2학기 이상이고 12학점 이상	
박사	2	1학기 이상이고 9학점 이상	
	3	2학기 이상이고 18학점 이상	

③ 편입학에 관한 사항은 신입학에 준한다.

제9조(재입학) 재입학은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10조(외국인 학생) 대학원 입학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본 대학원의 외국인 학생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전형을 진행하며, 대학원위원회의 제청에 총장이 입학을 허가한다.

### 제3장 등 록

제11조(종류) 등록은 정규등록과 연구등록으로 나눈다.

제12조(정규등록)①교과목 이수, 각종시험, 연구실험 등의 학위과정이수를 위하여 석사학위과정은 최소 4학기, 박사학위과정은 6학기의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학위과정 이수기간 내에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학위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수업연한 초과등록금은 수강신청하는 학점이 3학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학기 등록금의 2분의 1을 납입하고, 4학점 이상인 경우에는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학위논문학점은 해당하지 않는다

제13조(재입학/편입학자 등록) 재입학 및 편입학을 허가 받은 학생은 당해 학기 정기등록금 이외의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등록) 학위과정 수료이후에 논문을 제출하는 학기에는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4장 휴학, 복학, 제적 및 재입학

제15조(휴학의 종류) 휴학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휴학 : 질병, 사고, 가정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2. 입대휴학 : 교육소집 또는 입영영장을 받고 군에 입대하는 경우

제16조(휴학절차) ①일반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등록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질병일 경우에는 진단서를, 가정사정 및 기타의 경우에는 사유서 또는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②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석사학위과정은 통산하여 3학기, 박사학위 과정은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포함하지 않으며 병가, 전출 등 부득이 한 경우 총장의 승인으로 휴학 횟수를 초과 할 수 있다.

제17조(휴학원 제출시기) ①일반휴학은 매학기 초 15일 이내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군입영 휴학자는 입영일자 10일 이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매학기 등록기간 1주일 전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을 필하고 휴학하였던 자가 원학기에 복학을 출원할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예납으로 간주한다.

제19조(제적)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으로 처리한다.

1. 학력을 위조한 자
2.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않은 자
3.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4. 대학원위원회에서 제적으로 징계된 자
5.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6. 삭 제

제20조(자퇴) 자퇴를 하는 학생은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5장 교과과정, 수강신청, 학점, 시험

제21조(교과과정 편성) 교과과정은 학과 단위로 편성하여 소정의 절차에 의한 조정을 거쳐 확정한다.

제22조(교과과목의 개설) 학과 주임교수는 개강 1개월 전에 학과목 개설 신청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학점수) 설강된 각 과목의 학점수는 3학점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이수학점) ①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기 위한 최저학점은 24학점, 박사학위과정은 석사학위 과정 24학점을 포함한 60학점이며 평균 성적은 80점(B) 이상이어야 한다.

②본 대학원 내 동일계열 학과의 개설과목과 유사한 과목에 한하여 학과주임교수의 제청과 대학원장의 승인으로 12학점 범위 내에서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본 대학원과 상호학점교류 협약을 체결한 타 대학의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본 대학원 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한 학기 이수 한도는 9학점 이내로 하고 총 이수 학점은 석사 12학점과 박사 18학점 이내로 한다.

④편입학자의 이수학점인정은 전적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중 석사 12학점, 박사 18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⑤편입학자의 이수학점인정을 위하여 편입학자는 편입 학기에 이수 학점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재입학자의 이수학점 인정은 제적 및 자퇴 이전의 취득학점을 통산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제25조(선수과목) ①석사과정과 박사과정에 입학한 자중 하위과정의 전공이 본 대학원의 전공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석사과정은 10학점 이내, 박사과정은 24학점 이내의 선수과목을 본 교내의 하위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하며 그 성적이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재수강하여야 한다.

②선수과목을 이수할 시에는 소정의 수강료를 따로 징수할 수 있다.

③선수과목의 결정은 해당학과 주임교수가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며, 학과주임교수는 결정된 보충과목의 교과명을 학생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④선수과목 이수대상자중 본 대학원의 보충과목과 유사한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전공주임교수의 제청에 의하여 본 대학원의 보충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선수과목의 이수학점은 대학원 수료학점과는 별도로 처리하며, 대학원 성적평균에도 가산되지 아니한다.

⑥타전공 출신자로서 보충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제26조(수강신청 학점) 수강신청 학점은 매학기 9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과목별 성적은 70점 (C)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보충과목 이수시는 학기당 6학점의 범위에서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제27조(수강신청 절차) ①등록을 마친 학생은 매 학기 수강신청기간에 인터넷을 통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수강할 수 없다.

②수강신청 시 그 학기에 이수할 교과목을 선정한 후 정해진 모든 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제28조(수강신청 과목변경) 수강신청을 완료한 후에는 수강과목을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강신청 과목의 변경을 인정한다.

1. 본 대학원 교무수행상 불가피한 사유로 설강과목의 폐강 또는 유사과목과 통폐합하는 경우

2. 전항의 사유에 의한 수강과목 변경원은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은 후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수업계획안) 교과담당 교수는 수업계획안을 작성하여 해당학기 개강일까지 대학원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강학생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30조(시험) 매학기 각 교과목에 대하여는 정기 또는 수시시험에 의한 평가를 행할 수 있다. 그러나 교과목에 따라서는 이를 연구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시험을 행할 수 있다.

제31조(출석부 관리) ① 강의 출석부는 과목 담당교수가 관리하며, 출결사항은 매시간 확인 표시하여야 한다.

② 각 과목 담당교수는 학기 말 시험 완료시기에 출석부를 대학원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 6 장 자격시험

### 제 1 절 외국어시험

제32조(응시자격) 어학시험 응시자격은 2학기 이상 재학생으로 한다.

제33조(응시절차) 어학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시험실시 15일 이전에 소정의 원서와 전형료를 대학원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시험시기) 어학시험은 3월과 9월 중에 실시한다.

제35조(어학시험 종류)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외국시험 응시과목은 영어와 한국어(외국인에 한함)로 하며 시험시간은 100분 이내로 한다. 다만, 영어와 한국어 이외의 외국어는 주임교수가 지정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외국어로 할 수 있다.

제36조(출제위원) 출제위원은 해당학과 담당교수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하며,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공통영어와 한국어 시험 출제위원은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제37조(출제범위) 학생이 전공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수준이 되는가를 평가하는 범위로 한다.

제38조(배점 및 합격기준) 대학원의 석.박사과정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단, 석. 박사과정의 예체능계열은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39조(시험면제) 대학원내 석사과정 중 석사학위 소지자 및 대학원에서 인정하는 각종 외국어시험 또는 어학강좌를 이수한 자는 외국어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40조(재시험) 불합격자는 횟수에 관계없이 재응시할 수 있다.

### 제 2 절 종합시험

제41조(응시자격) ① 석사과정의 종합시험은 3학기 이상 등록자로서 어학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② 박사과정의 종합시험은 4학기 이상 등록자로서 어학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제42조(응시절차) 응시자는 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시험실시 15일 전에 소정의 응시원서와 전형료를 대학원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시험시기) 시험은 4월과 10월 중에 실시한다.

제44조(시험과목) ①석사과정의 시험과목은 주임교수가 지정한 3과목으로 한다.

②박사과정의 시험과목은 주임교수가 지정한 4개의 과목으로 한다.

제45조(출제위원) 출제위원은 해당학과 대학원 담당교수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하며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제46조(배점 및 합격기준) 종합시험은 석·박사과정 구별 없이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47조(재시험) 불합격된 과목이 있을 때는 재응시할 수 있고, 불합격된 자의 경우에는 종합시험 응시횟수에 관계없이 재응시할 수 있다.

## 제7장 주임교수

제48조(주임교수) ①각 학과마다 주임교수를 두며 주임교수는 조교수 이상인 전임교원으로 한다.

②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49조(주임교수의 직무) 주임교수는 해당 학과의 교과목 설강, 지도교수의 제청 및 기타 당해 학과의 각종 학사업무를 관장한다.

제50조(주임교수의 임기) 주임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 8 장 학위논문

제51조(학위논문 지도교수) 논문 지도교수는 대학원은 석사학위과정 해당 학생의 제2학기초에, 박사학위과정은 제3학기초에 주임교수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제52조(지도교수 자격) 지도교수의 자격은 본교 전임교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생의 전공에 따라 부득이 한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석사학위 과정은 석사학위 이상, 박사학위 과정은 박사학위 이상의 외부인사도 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제53조(지도교수의 직무) 지도교수의 직무는 해당 학생의 강의 선택, 학사지도, 학위 논문작성을 지도한다.

제54조(지도교수 변경) 논문지도교수를 부득이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논문지도교수 변경원을 석사학위 과정은 3학기까지, 박사과정은 4학기까지 제출하며, 원장의 승인을 거쳐석사과정 1학기 이상, 박사과정 2학기이상 논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공이 같은 교수가 논문 지도를 계속할 경우에는 이에 준하지 아니한다.

제55조(연구계획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논문연

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대학원: 석사과정- 3학기  
박사과정- 4학기

제56조(학위논문 제출자격) 학위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석사과정

- 가. 4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마친 자
- 나. 24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 다. 지도교수의 배정을 받아 논문연구계획서의 승인을 받고 1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 라. 어학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마. 삭 제

2. 박사과정

- 가. 6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마친 자
- 나. 60학점(석사과정 24학점 포함) 이상 취득한 자로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 다. 지도교수의 배정을 받아 논문연구계획서의 승인을 받고 2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 라. 어학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마. 삭 제

제57조(학위논문 제출시기) 학위논문제출시기는 매년 6월과 12월로 한다.

제58조(학위논문 심사청구 및 예외) ①학위논문을 제출함에는 소정의 심사료와 함께 다음 서류를 정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학위논문계획서
- 2. 학위논문지도 상황카드
- 3. 학위논문 심사청구서
- 4. 학위논문 심사결과보고서(회의록 첨부)
- 5. 학위논문 연구윤리준수확인서

②대학원 미술학과 석사과정 이수자 중 작품전시(개인전) 개최자는 작품에 대한 소논문 및 엿 세이로서 학위논문을 대신할 수 있다.

제59조(심사위원구성) ①각 학과(전공)주임교수는 논문심사위원 후보를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각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②대학원장은 제청된 심사위원후보를 확정하여 논문심사를 위촉한다.

③심사위원의 자격은 논문 제출자의 전공분야 또는 이에 관련분야의 교내·외 대학전임교원 또는 기타 대학원장이 특히 인정한 자로 한다.

④석사학위논문의 심사위원은 3명, 박사학위논문의 심사위원은 5명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도교수는 자동적으로 심사위원이 된다.

⑤박사학위논문 심사위원 중 외부인사는 1인 이상 2인 이내로 한다.

제60조(심사위원장) ①심사위원장은 논문지도교수를 제외한 위원 중에서 1인을 선출한다.

②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의 진행을 주관하고 심사결과를 대학원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심사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심사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제61조(심사위원회 정족수) 석사학위논문의 심사는 심사위원 전원, 박사학위논문의 심사는 심사위원 4인 이상의 출석으로 한다.



제62조(심사위원의 교체금지) 논문심사를 개시한 후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심사위원이 질병, 해외여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이 교체할 수 있다.

제63조(심사의 방법) ①논문심사는 본 대학교 총장이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심사위원이 이를 행한다.

②논문심사는 제출된 논문원고에 대하여 심사하며 내용의 수정 및 보완사항을 지적하고,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논문 제출자에게 부분, 인용문헌, 역본, 모형, 표본 기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본 심사는 논문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수정보완이 이루어졌는가를 검토하고 논문의 체제가 소정의 규격대로 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자귀의 잘못 등을 조사한 후 논문심사의 판정을 한다.

제64조(논문심사의 판정) ①석사과정의 합격판정은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이 논문 및 구술시험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평가를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평가하였을 경우 합격으로 판정한다.

②박사과정의 합격판정은 심사위원 5분의 4이상이 논문 및 구술시험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평가를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평가하였을 경우 합격으로 판정한다.

제65조(심사의 연기) 지도교수가 예비심사결과 논문 내용이 학위논문으로서 불충분하여 연구, 실험의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가연구를 명하고 심사는 1학기 연기시킬 수 있다.

제66조(심사결과보고) 심사위원장은 심사종료와 함께 그 심사결과의 요지를 소정의 서식에 작성하여 대학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7조(논문의 작성) ①학위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영문초록만 첨부하여야 한다.

②논문이 외국어로 작성될 경우 논문제출 2학기 이전 학위논문계획서 제출시 논문지도교수의 지도승인서(외국어 작성)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외국어로 작성된 논문에는 반드시 국문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8조(학위논문최종작성) 논문제출자는 논문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심사에서의 수정 보완지시를 충실히 행하여 논문을 최종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69조(논문의 체제) 학위논문의 체제는 다음 규격에 따라야 한다.

1. 용어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한다.
2. 논문의 제목은 26자 이내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제목을 달 수 있다.
3. 논문의 크기는 4·6배판으로 한다.
4. 지질은 70파운드 이상의 인쇄용지로 한다.
5. 하드카바 표지의 색상은 대학원은 검정색 검정색으로 하고, 금박인쇄 클로스 양장 제본으로 한다.
6. 삭 제
7. 표지 등 논문 인쇄 글씨체는 신명조체로 한다.
8. 표지 다음에는 속표지 그 다음에는 인준서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
9. 인준서 양식, 활자 크기는 각각 별지 양식에 따른다.

제70조(학위 논문 내용순서) 학위 논문이 갖추어야 할 사항과 순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속표지

2. 인준서
3. 목차
4. 본문
5. 참고문헌
6. 영문요약
7. 부록기타

제71조(논문의 제출 부수) 통과된 논문은 하드카바본 12부를 소정 기일내에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2조(논문제출 시한) 삭제

## 제 9 장 학위수여 및 논문공표

제73조(학위종별)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의 종별은 별지 1과 같다.

제74조(논문공표) 합격된 박사학위논문은 박사학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학술지, 협회 등에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교육부장관이 공표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75조(학위수여자격)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생은 학위수여 자격을 가진다.

### 1. 석사과정

- 가. 4학기 이상 등록을 마치고 30학점 이상 취득한 자
- 나. 취득학점의 총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 다. 1종의 어학시험에 합격한 자
- 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마. 논문연구계획 승인을 받은 학생으로서 1학기 이상 논문연구 지도를 받은 자  
(특수대학원의 비논문신청자 학점이수)
- 바. 학위논문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
- 사. 삭제

### 2. 박사과정

- 가. 6학기 이상 등록을 마치고 66학점(석사과정 24학점 포함)이상 취득한 자
- 나. 취득학점의 총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 다. 어학시험에 합격한 자
- 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마. 논문연구계획 승인을 받은 학생으로서 2학기 이상 논문연구 지도를 받은 자
- 바. 학위논문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
- 사. 삭제

제76조(학위수여사정) 총장은 학위수여 자격을 각 대학원위원회에 회부하여 학위수여자 사정을 행한다.

제77조(학위수여)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은 학위수여 사정에 통과된 자에게 별지1에 명시된 학위를 수여한다.

제78조(학위수여시기 및 횟수) 학위수여는 매학기 말 년 2회로 한다.

제79조(학위수여의 취소) 학위를 받은 자가 그 학위 과정 이수중에 학생 신분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었음이 밝혀졌을 경우 또는 학위를 받은 후 그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총장은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80조(과정수료)① 대학원 박사과정은 6학기 이상, 석사과정은 4학기 이상 수학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는 과정수료를 인정한다.

②과정수료의 시기는 정규 등록을 마친 마지막 학기의 말일로 한다.

제81조(명예박사학위) 명예박사학위는 우리나라 학술과 문화에 특수한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문화 향상에 현저한 공적을 나타낸 자에게 수여한다.

제82조(명예박사학위 종별) 본 대학교에서 수여하는 명예박사학위의 종별은 이를 받을 자의 공헌의 성질에 따라 구별한다.

제83조(명예박사학위 수여절차) 명예박사학위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수여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4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세칙은 통합학칙 제정에 따라 새로이 제정하고, 시행일 이전 입학자에게도 적용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세칙은 200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변경세칙은 시행일 이전 입학자에게도 적용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세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변경세칙은 시행일 이전 입학자에게도 적용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세칙은 2005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변경세칙은 시행일 이전 입학자에게도 적용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세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변경세칙은 시행일 이전 입학자에게도 적용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세칙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변경세칙은 시행일 이전 입학자에게도 적용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세칙은 2007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변경세칙은 시행일 이전 입학자에게도 적용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세칙은 2008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세칙은 2012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